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7,701,429	14,031,043
일반회계	448,898,689	13,466,961
특별회계	18,802,740	564,082
기타특별회계	18,802,740	564,0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287,716	488,631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28,359	85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50,844	25,525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169,266	35,078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7,402	522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449,019	13,471
안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34	4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4,200,000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3,200,000천원 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941,96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9,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